

『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한성희 의원

2. 제안이유

- 현재 운용중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의 “금융기관 부담”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금융기관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,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, 정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 정비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'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은
 -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7조(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)의 조문 중,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의 구미시,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“금융기관 부담” 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, 타당하다고 판단됨.